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의 매출액 비중 조건 추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608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의 매출액 비중 조건 추가	2
※ 참고자료	
[참고 1]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등 목록	10
[참고 2] 농안법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예시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2.
3. 회 부 일 : 2025.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개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의 매출액 비중 조건 추가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하여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5% 이상인 경우에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 ----- ----- ----- ----- ----- -----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적용 배제 규정은 1976년 농안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한 사항으로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임.

【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등 】

연번	구분	기능	법정 설치주체	관련 허가 등	예시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2조제2호)	농수산물의 도매	<u>지방자치단체</u>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 또는 시)	‘ <u>시(市)</u> ’가 지방도매시장 개설 시 <u>도지사 허가</u> 필요	서울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서울특별시)
2	농수산물 공판장 (제2조제5호)	농수산물의 도매	<u>농협, 수협,</u> 산림조합, 생산자단체, aT	개설 시 <u>시·도지사의</u> <u>승인</u> 필요	농협 가락공판장 (농협)
3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제2조제6호)	농수산물의 도매	<u>민간인등</u>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자)	개설 시 <u>시·도지사의</u> <u>허가</u> 필요	안양시 민영축산물 도매시장 [(주)협신식품]
4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제2조제12호)	농수산물의 수집·포장· 가공·보관· 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	① <u>국가, 지방자치 단체</u>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u>지원을</u> <u>받은 자</u>	없음 (다만, <u>국가 또는</u> <u>지자체의 지</u> <u>원</u> 없이는 민간 이 설치 불가)	양재 농산물종합 유통센터 (농협)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배제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는 ①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개설등록 시의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¹⁾과 ②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²⁾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등 기준 】

연번	구분	기준
1	대규모점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1. <u>대형마트</u> 2. <u>전문점</u> 3. <u>백화점</u> 4. <u>쇼핑센터</u> 5. <u>복합쇼핑몰</u>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연번	구분	기준
2	준대규모점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가공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부문(농협 등)에서 개설·설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농수산물 유통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이 설정하고 있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이라는 매출액 비중 조건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적용 기준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등³⁾은 모두 농수산물의 유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곳에만 적용하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등 중에서 ① 농수산물공판장, ② 민영도매시장, ③ 민간 설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세 종류만이 대상이 됨.⁴⁾

그런데, 이 중에서 농수산물공판장(농협가락공판장, 양재 aT 화훼공판장 등)과 민영도매시장(안양민영축산물도매시장 등)은 공산품 판매 등이 아니라 농수산물의 유통만을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사실상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설은 그 시설 내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하여 공산품 판매를 포함한 소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 등의 민간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뿐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에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게 수지개선 및 이용고객의 편의 등을 위한 공산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3)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등의 구체적인 목록은 [참고자료 1]를 참조

4)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만이 개설자가 될 수 있어 개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전자(①)의 경우는 개정안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공산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여전히 주된 기능은 농수산물 유통이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서는 운영주체에게 농산물 매출액 비중 51% 이상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⁵⁾

물론, 이는 지침상의 노력 의무에 그치는 점, 개정안보다 낮은 51%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음.

현재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전국에 15개소가 있으나, 이 중 9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민간 설치 시설은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양재점)을 포함한 6개소만이 존재함.

【 「농안법」 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목록 】

연번	소재지	사업(설치)주체	운영주체	농산물취급비율('24)	개장일
1	서울 서초(양재)	민간	농협유통	62.3	1998.1.15.
2	서울 도봉(창동)		농협유통	58.3	1998.5.1.
3	충북 청주		농협충북유통	57.6	1998.10.28.
4	전북 전주		농협유통	56.2	1999.12.18.
5	대구 군위		농협하나로유통	44.6	2001.1.12.
6	대전 중구		농협대전유통	75.2	2002.3.29.

5)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

제7조(도매거래의 예외) ① 운영주체는 잔품처리, 시설 및 인력활용, 수지개선 및 이용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생활필수 공산품의 취급을 포함한 소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연간 전체 매출액 대비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별표3]에 의한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품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센터는 제외한다.

연 번	소재지	사업(설치)주체		운 영 주 체	농산물취급 비율('24)	개 장 일
7	경기 성남	지자체	성남시	농협하나로유통	67.0	2000.8.30.
8	경기 고양		고양시	농협하나로유통	59.6	2001.6.8.
9	대구 달성		달성군	농협하나로유통	48.0	2003.6.20.
10	전남 목포		목포시	농협하나로유통	56.0	2003.8.22.
11	경기 수원		수원시	농협하나로유통	('23) 58.7	2003.10.10.
12	경남 김해		경상남도	농협하나로유통	53.8	2005.11.25.
13	충남 금산		금산군	휴온스네이처	('23) 2.4	2006.8.3.
14	울산 북구		울산시	농협하나로유통	56.1	2009.5.29.
15	경남 양산		양산시	우리마트	61.1	2011.12.1.

※ 주1: 음영 부분(1~6번)은 사업주체가 민간으로서,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임

※ 주2: 13번은 인삼 '가공품'을 주로 유통하며, 사업주체가 지자체이므로 개정안의 대상이 아님

※ 주3: 수협 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없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민간이 사업주체인 6개소 중 5개소가 이미 개정안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① 소수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게만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시키거나, ② 민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6개소로 하여금 앞으로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두 가지 효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을 도출할 수 없는 개설 첫해까지는 신규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민간 설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음.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단순히 운영에 관한 규제 외에도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설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농산물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현행법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은 정동만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⁷⁾

전제의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각각에 존재함에 따라⁸⁾ 두 법률 모두가 개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심사 경과를 감안하여 심사 및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해당 법률안은 개정안과 함께 2025년 9월 2일에 발의되어, 2025년 9월 3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8)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참고자료 1

농안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등⁹⁾ 목록

※ 자료: 농식품부, 해수부 제출

1. 농수산물도매시장

1) 중앙도매시장

연번	소재지	시장명	취급부류	개장일
1	서울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85.06.19
2		서울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수산	'71.06.
3	부산	부산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3.12.21
4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수산	'08.09.18
5	대구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88.10.07
6	인천	인천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4.01.11
7		인천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1.05.09
8	광주	광주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1.02.27
9	대전	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87.11.02
10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01.07.21
11	울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0.03.20

2) 지방도매시장

연번	소재지	시장명	취급부류	개장일
1	서울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4.02.25
2		서울양재양곡도매시장	양곡	'88.08.03
3	부산	부산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0.12.22
4	인천	인천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	'82.06.21
5	대구	대구한약재도매시장	한약재	'82.07.01

9) 「농안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배제 대상

연번	소재지	시장명	취급부류	개장일
6	광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04.04.20
7		광주축산물도매시장	축산	'84.06.01
8	경기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3.02.27
9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7.09.06
10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8.02.27
1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7.06.09
12	강원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96.09.06
13		원주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1.04.04
14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9.11.24
15	충북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88.11.10
16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5.11.15
17	충남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5.07.18
18	전북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3.10.29
19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8.01.05
20		정읍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0.03.10
21	전남	순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1.04.19
22		목포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7.05.26
23		여수농산물도매시장	청과	'14.12.01
24	경북	포항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1.10.26
25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수산	'97.04.21
26		구미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1.04.17
27		포항수산물도매시장	수산	'09.12.09
28		경주농산물도매시장	청과	'63.10.18
29		김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6.05.01
30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82.06.20
31		영천약초도매시장	약용	'15.10.17
32	경남	창원팔용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5.10.14
33		창원내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	'02.12.27
34		진주농산물도매시장	청과	'99.11.24

2. 농수산물공판장

1) 농산물공판장 중 산지공판장¹⁰⁾

연번	부류	소재지	공판장명	개장일
1	청과	강원	대관령원예농협 공판장	'99.07.12
2		경남	이방농협공판장	'95.12.29
3			남지농협대신지점 공판장	'95.08.26
4			창녕농협 공판장	'01.07.13
5			밀양농협 공판장	'97.02.01
6			통영농협농산물공판장	'79.09.20
7			고성농협공판장	'87.08.10
8			삼천포농협공판장	'94.05.02
9		경북	대구경북능금농협 영천공판장	'97.07.01
10			의성농협 공판장	'89.08.04
11			서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09.08.17
12			경주농협성동지점 농산물공판장	'96.07.10
13			영천농협 공판장	'97.07.03
14			하양농협공판장	'21.06.01
15			청도농협공판장	'77.06.20
16			새청도농협공판장	'84.06.18
17			용암농협공판장	'11.12.26
18			성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공판장	'07.03.06
19			성주참외원예농협공판장	'99.03.22
20			왜관농협공판장	'84.08.23
21			김천농협공판장	'81.01.10
22			상주농협공판장	'97.04.03
23			상주원예농협 공판장	'95.04.03
24			점촌농협공판장	'90.03.29
25			초전농협 공판장	'23.03.23
26			선남농협 공판장	'23.09.21
27			풍기농협 백신지점	'24.07.02

10) 도매시장공판장은 각 중앙/지방도매시장에 소재하여 앞의 목록에 포함되므로 생략함

연번	부류	소재지	공판장명	개장일
28	청과	대구	농협경제지주 대구공판장	'62.05.20
29			농협경제지주 대구태평로공판장	'24.06.05
30		전남	여수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	'65.11.01
31			여수원예농협 청과공판장	'22.09.22
32			녹동농협 농산물공판장	'99.05.10
33			나주배원예농협 공판장	'79.06.01
34			목포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63.06.04
35		전북	전주농협모악공판장	'97.06.12
36			남원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75.01.15
37			김제원예농협공판장	'95.04.17
38			군산원예농협 공판장	'67.06.10
39		제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	'85.12.07
40		충남	공주농협공판장	'72.01.01
41			논산계룡농협 공판장	'99.07.15
42			예산능금농협 농산물공판장	'99.06.11
43			충서원예농협 공판장	'99.08.02
44		충북	제천농협농산물공판장	'81.07.25
45	화훼	경기	한국화훼농협 고양화훼공판장	'23.09.05
46		경남	영남원예농협 공판장	'91.02.10
47		광주	광주원예농협 화훼공판장	'01.11.01
48		부산	부경원예농협 화훼공판장	'96.12.16
49			농협경제지주 부산화훼공판장	'97.06.17
50		충북	한국화훼농협 음성화훼공판장	'15.11.25
51		서울	aT 양재동 화훼공판장	'91.6.26
52	임산	강원	홍천군산림조합	'93
53			양구군산림조합	'95
54			인제군산림조합	'08
55			고성군산림조합	'77.6.6
56			양양속초산림조합	'15
57			강릉시산림조합	'70
58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97

연번	부류	소재지	공판장명	개장일
59	임산	경남	함양군산림조합	'21.03.22
60			거창군산림조합	'01
61		경북	신경주농협 공판장	'93.11.21
62			의성군산림조합	'23
63			안동시산림조합	'20
64			영주시산림조합	'20
65			청송군산림조합	'20
66			영덕군산림조합	'21
67			청도군산림조합	'16
68			상주시산림조합	'17
69			문경시산림조합	'12
70			예천군산림조합	'16
71			봉화군산림조합	'92
72			울진군산림조합	'16
73		전남	표고버섯유통센터	'16
74		전북	진안군산림조합	'07.7
75		충남	청양군산림조합	'13
76			부여군산림조합	'16
77			공주시산림조합	'14
78		충북	영동군산림조합	'80
79			충주산림조합	'06

2) 수산물공판장

연번	소재지	공판장명	개장일
1	서울	수협중앙회 가락공판장	'85.6.10.
2		수협중앙회 강서공판장	'99.3.12.
3	부산	부산시수협 부산수산물공판장	'08.4.2.
4	인천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73.5.1.
5	광주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	'04.4.20.
6	울산	울산수협 공판장	'90.3.20.

연번	소재지	공판장명	개장일
7	경기	수협중앙회 구리공판장	'97.6.2.
8		경기수협 수원공판장	'93.2.27.
9	전북	수협중앙회 전주공판장	'93.10.29.

3. 민영도매시장

연번	소재지	시장명	취급부류	개장일
1	경기	안양민영축산물도매시장	축산	'98.11.
2	경북	상주민영농산물도매시장	청과	'72.08.23
3		영주민영농산물도매시장	청과	'16.06.24

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번	소재지	사업주체	운영주체	개장일
1	서울 서초(양재)	농협유통	농협유통	1998.1.15.
2	서울 도봉(창동)	농협유통	농협유통	1998.5.1.
3	충북 청주	농협충북유통	농협충북유통	1998.10.28.
4	경기 성남	성남시	농협하나로유통	2000.8.30.
5	경기 고양	고양시	농협하나로유통	2001.6.8.
6	경기 수원	수원시	농협하나로유통	2003.10.10.
7	대구 군위	농협하나로유통	농협하나로유통	2001.1.12.
8	전북 전주	농협유통	농협유통	1999.12.18.
9	대전 중구	농협대전유통	농협대전유통	2002.3.29.
10	대구 달성	달성군	농협하나로유통	2003.6.20.
11	전남 목포	목포시	농협하나로유통	2003.8.22.
12	충남 금산	금산군	휴온스네이처	2006.8.3.
13	경남 김해	경상남도	농협하나로유통	2005.11.25.
14	울산 북구	울산시	농협하나로유통	2009.5.29.
15	경남 양산	양산시	우리마트	2011.12.1.

참고자료 2

농안법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예시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구분	시설 전경	내부 시설
김해 유통센터 (농협하나로유통)		
금산 유통센터 (휴온스네이처)		
양산 유통센터 (우리마트)		